

(앞 쪽)

(일반용지 60g/m²)

※ 신고안내

(뒤 쪽)

제출하는 곳	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·도 시·군·구	처 리 부 서	축 산 과
유 의 사 항	1.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가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2. ②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[예 : 도축업(소)],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·유가공업·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[예 :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)],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수입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[예 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